

기업지원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3. 11. 8.)

(전부개정 2014. 5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LINC+사업단 기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1., 2022.3.29.>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
2. 기술·경영·디자인지도 지원
3.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
4. 삭 제 <2022.3.29.>
5. 지역특화산업분야 ICC 설립 및 운영 지원
6. 삭 제 <2022.3.29.>
7. 쌍방향 기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8. 산·학·연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의회 운영
9. 글로벌 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<신설 2022.3.29.>
10.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<개정 2022.3.29.>

[본조개정 2017.7.1., 2018.9.1.]

제3조(위원회)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) 가족회사 관리와 운영, 산·학·연·관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<개정 2017.7.1.>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LINC+사업단 지원금, 본교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7.7.1., 2022.3.29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기업지원센터 운영규정 8-0-3-2

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